

182경찰민원콜센터 자주 묻는 교통민원 Q&A

Q1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분실신고만 신청

방 문: 전국 경찰서 민원실

✓ 대리인 접수 불가

■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 (분실 재발급)

✓ 분실 재발급 신청 후 분실신고 취소 불가

인터넷 : 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 1577-1120

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고객지원센터 ☎ 182(유료)

방 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대리인 발급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Q2 출국해야 하는데 급히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5cm x 4.5cm)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8,500원은 카드결제만 가능)

○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위치 안내 (☎ 1577-1120)

Q3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싶은데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신규발급 전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단, 인터넷 접수 시 여권 발급 전인 경우 신청 불가)

<구비서류> 신분증, 여권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수수료 10,000원 결제를 위한 카드(카드결제만 가능함) 지참하여 방문

Q4

(영문)운전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하시거나 인터넷 정부24(www.gov.kr), 교통민원24(www.efine.go.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무료)

※ 대리인 발급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교통민원24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5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대상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자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 교부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

Q6

고령운전자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어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취소 접수방법은 운전면허증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고령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운전면허 자진취소 접수와 동시에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업무처리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Q7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정지처분 결정 전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의사를 경찰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10점 단위로 공제되며,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특혜점수 30점이 있는 경우

- 사례1) 처분별점 40점 : 10점만 사용 가능
- 사례2) 처분별점 50점 : 20점만 사용 가능

Q8

정지처분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동위험행위, 1회 교통사고 40점이상, 음주운전, 초보운전자,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 범칙금 10만원(음주운전 1회 이상 재위반자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15만원)이 부과됩니다.

Q9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뭔가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구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행위자(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행위자(운전자) 또는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 불가

※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기록

Q10 과태료 감경 대상자를 알고 싶어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아래의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하여 과태료 금액 감경 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Q11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를 알고 싶어요.

교통민원24(www.efine.go.kr)나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계좌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민원24(www.efine.go.kr)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카드(신용/체크)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24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12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전환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카드(신용/체크)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전환은 차량소유자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하며 전환 후 다시 과태료의 전환은 불가능.

※ 1차 납부기한 내까지 전환가능

※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 교통민원24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13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과태료 고지서를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실거주지에 거주하여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지임을 입증할 공적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신청시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지의 주소로 발송 됩니다.

Q14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해도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Q15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어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습니다. 보통 5~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 앱(App)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16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조사받은 경찰서 관할 시·도 경찰청 민원실로 방문해 주시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시·도 경찰청에서 경찰서 조사서류를 검토하여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